

『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사진 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, 사진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사업 및 지원(안 제5조, 안 제6조)
- 위탁(안 제7조)
- 포상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, 제3조, 제14조, 제39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8. 27. ~ 9. 3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사진 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의 ‘문화예술’의 범주에 ‘사진’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진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을 위한 적극적 시책 발굴, 계획수립,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 전반에 걸쳐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